

[특집]

## 대세와 임종 세례, 보충 예식의 타당성에 대한 교회법적 평가

■  
김 길 민

[수원교구 장애인사목위원회 위원장·신부]

---

들어가는 말

- I. 한국 교회에서의 대세에 관해 혼란한 현실
  1. 분석 결과로 나타난 다양한 이해
  2. 현행 한국 교회에서의 대세에 대하여 세 가지 관점에서 정리
- II. 세례성사에 대한 두 법전의 기본 방향 비교
  1. 구 법전: 예식에 집중
  2. 제2차 바티칸 공의회
  3. 새로운 예식서
  4. 현행 83법전
- III. 직접적으로 관련된 여러 항목들과 제안
  1. 그리스도교 입문 개념과 입문 성사의 연결성
  2. 세례 예식의 구분
  3. 대세 혹은 죽을 위험 중의 세례
  4. 보충 예식
  5. 조건 대세 또는 조건부 세례
- IV. 기타 관련된 부분들과 제안
  1. 집전자
  2. 세례받을 자
  3. 대부모
  4. 세례 수여의 장소 및 기록과 증명 책임
  5. 거행 장소 중 병원
  6. 비신자 부모의 아이 세례
  7. 관계된 성사 대장 정리
  8. ‘죽을 위험 중의 세례’에 대한 관계자 교육

나가는 말

---

### 들어가는 말

약식세례(略式洗禮; baptismus simplex) 혹은 사적 세례(私的洗禮; 라틴어 baptismus privatus, 영어 private baptism)를 의미하는 ‘대

세’(代洗)가 현실적으로 한국 교회에서 많이 사용되며 이루어지고 있다.

1995년에 공포되어 지금도 효력을 발생하고 있는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이하 사목 지침서라 표기)에서는 47조부터 65조까지 세례성사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그 가운데 55조가 임종 세례에 대하여 규정한다. 사목 지침서 본문에서는 한번도 ‘대세’를 사용하지 않고, 다만 55조 1항 3에서 근거로서 ‘어른 입교 예식서 3장, 임종 대세’를 인용하면서 단 한 번 쓰고 있다. 2002년 ‘한국 교회의 교회법 보완 규정’에서는 교회법 제535조 1항 부분에서 본당 사목구에 비치할 대장 목록 중에 대세자 대장<sup>1)</sup>을 언급한다. 2015년 주교회의 추계 정기총회에서 세례 및 다른 성사들을 기록하는 문서들은 ‘세례 대장’처럼 대장이란 단어를 사용하지만, 대세에 관해서는 ‘대세 기록’으로 바뀌었다.

대세 혹은 임종 세례 더 나아가서는 세례성사에 대한 가톨릭 교회의 기본적인 개념이 변화되면서 한국 교회에는 혼란이 있다. 이 글에서는 ‘대세’에 중심을 두고, 그리스도교 입문 성사 관점에서 세례의 위치와 이와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 고찰한다.

## 1. 한국 교회에서의 대세에 관해 혼란한 현실

한국 교회에서 대세가 어떻게 알려져 있는지를 알기 위하여 인터넷상에 나타난 여러 사전들, 한국가톨릭대사전, 주교회의 홈페이지 등을 분석하였다. 대세는 사라진 용어가 아니라, 적어

1) 2002년 한국 교회의 교회법 보완 규정 교회법 제535조 1항: (본당 사목구 대장에 대한 규정)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는 본당 사목구에 비치되어야 할 대장을 주교회의에서 정한 세례 대장, 재작성 세례 대장, 견진 대장, 혼인 대장, 병자성사 대장, 대세자 대장, 망인 대장, 교적 등으로 규정하고, 그 밖의 것은 교구장 주교의 규정에 따르도록 한다.

도 현실에서는 지금도 많이 사용되는 단어이고 교회 생활의 일부이다.

## 1. 분석 결과로 나타난 다양한 이해

한국 교회에서는 대세에 대하여 세례 받을 사람의 건강 상태, 그가 처한 상황, 예식, 집전자, 세례 여부, 조건 대세, 대세 후의 보충 예식 등 여러 조건에 따라 다양한 의견이 나타난다.

### 1) 세례 받을 사람의 건강 상태 — 임종 대세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는 대세가 불가능하다. 건강한 상태에서는 비상 상황에 처했을 때 대세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건강이 악화되어 위급한 경우, 죽기 바로 직전, 위독한 상태, 어쩔 수 없는 경우, 죽을 위험이 있는 경우에 대세가 베풀어진다. 이 대세를 임종 대세, 비상 세례, 위독 대세 등으로 부르고 있다.

### 2) 비상 상황

전쟁이나 박해 등으로 비상사태가 생겼을 때 대세가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때 사제가 오지 못할 때라는 조건이 붙는다.<sup>2)</sup> 물론, 이 경우에 대상자의 건강은 고려할 점이 아니다. 죽을 위험이 있는 경우이지만, 대상자가 건강이 위독한 것이 아니라, 죽음의 위험이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를 언급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고, 대부분의 경우 세례 받을 사람이 임종에 가까울 때를 말하고 있다.

2) [예] ‘죽을 위험에 처하거나, 전쟁 혹은 박해 등의 상황으로 사제를 청해 올 여유가 없을 경우에 한해서 대세를 받을 수 있다.’ 박일영(대구효성 가톨릭대학교 종교학과), ‘대세’, 『한국가톨릭대사전』 3권, 1610쪽. 참고 문헌은 1932년의 <Directorium Commune Corea>와 1963년의 <상해 천주교 요리>이다. 즉 1983년 법전은 전혀 참고가 안 되었던 것 같고, 내용상으로도 구 법전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다.

### 3) 예식

정상적인 상태의 예식이 아니라, 예식 가운데 일부를 생략하는 경우이다.<sup>3)</sup> 이 점을 언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밑바탕에는 같은 의식이 깔려 있다.

### 4) 집전자

정상적인 세례의 경우는 성직자가 집전자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성직자를 대신하여 성직자가 아닌 이들 즉, 수도자나 평신도가 예식을 집전한다고 본다.<sup>4)</sup> 성직자도 이 예식을 집전할 수 있다는 점은 별로 나타나지 않는다.

### 5) 세례 여부와 조건 대세

세례를 받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붙는 제한적인 경우들이 있다. 이 경우에 조건 대세라고 말하는데, 상황에 따라 의미가 다양하다.

① 보통의 경우에는 세례를 받은 적이 있는지, 있다면 유효하게 받았는지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조건 대세를 한다.<sup>5)</sup>

② 또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채워져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를 말한다.<sup>6)</sup>

전례사전은 ①, ② 두 가지를 모두 표현한다. 즉, 다른 그리스도

---

3) 레지오 마리에 활동수첩 37쪽, 2015년: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에 따라 교회는 위급한 경우에 사제가 아닌 누구라도 세례성사를 베풀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대세란 세례성사를 대신 한다는 뜻이 아니라, 간략한 세례식이란 뜻이다.”

4) [예] 대세; 정식 세례성사를 대신하여 비상조치로 베푸는 세례. 죽을 위험에 처하거나 전쟁 또는 박해 등으로 세례성사 집행자인 사제가 없을 경우에 한해 집행한다(천주교용어자료집).

5) 과거에 유효하게 세례를 받았는지 의심스러울 때, 조건부로 세례를 주는 경우. (용어사전); 대세 [영] Conditional Baptism (전례사목사전) 114. 대세와 조건부 세례를 혼동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대세가 곧 조건부 세례는 아니기 때문이다.

6) 임종대세를 받을 사람이 의식을 잃은 경우에는 대세받을 원의가 있다는 조건하에 임종대세를 준다(가톨릭대사전); 조건대세는 세례 대상자가 의식을 잃어 기본 교리를 가르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 하는 것이다(한국가톨릭대사전); 조건 대세(條件代洗)는 의식이 없거나 사망 후 1시간 이내면 조건부 대세를 주는 것을 말한다(용어 사전).

교 종파에서 세례를 받았으나 그 성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가에 관해 심각한 의심이 있는 경우와, 죽을 수도 있거나 의식이 없는 환자인 경우 조건 대세를 받는다.

#### 6) 보충 예식(補禮; 라틴어 *caeremonia supplementi*)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하지는 않는다. ‘대세를 받은 자가 살아서 신앙생활을 계속하려면 세례성사 집행 시 부족했던 예식 부분을 보충하는 보례를 받아야 한다’<sup>7)</sup>거나 ‘만약 대세를 받은 사람이 당시 처한 상황에서 벗어났을 때는 교육을 마저 받고 세례성사 때 보충세례를 받으면 된다’<sup>8)</sup>처럼 세례의 보충인 것으로 평가할 만한 언급이 있다. 또한 ‘정식 세례성사를 받지 않고 위급 상황에서 대세를 받은 사람이 건강을 회복한 뒤 교리 교육과 세례성사의 다른 부분을 보충하여 받는 예식, 다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세례의 효력이 믿음을 완성시키도록 하는 예식’(천주교용어자료집)처럼 세례성사의 다른 부분을 보충하는 예식으로 언급되기도 한다.

#### 7) 대세와 세례의 구분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홈페이지에서는 대세와 세례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교회 창설 과정에서 이승훈이 북경에서 정상적인 세례를 받았다. “이승훈은 서울의 수표교 부근에 있던 이벽의 집에서 이벽에게 ‘세례’를 주었다. 여기에서 한국 교회의 출발점이 마련된다. 왜냐하면 교회는 세례를 통하여 결속된 복음 선포 기능을 수행하는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나라 교회 또는 그리스도교 신앙 공동체가 출발하게 되었다.”

신자들의 생활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신자들은 박해 때에도 어려운 이웃과 부모 잃은 어린이를 힘써 돌보았다. 또한 죽을 위험에

7) 박일영, ‘대세’, 같은 쪽.

8) <https://namu.wiki/w/대세>

놓여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힘써 ‘대세’(代洗)를 주어 그들의 영혼을 구제하고자 하였다.”

이승훈이 이벽과 초대 교회 공동체원들에게 했던 세례를 대세라고 하지 않는 반면, 죽을 위험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는 대세를 주었다고 한다. 즉, 여기서는 죽을 위험에 놓인 사람들에게 이루어진 세례만을 대세라고 하면서, 집전자가 성직자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사항이기에 세례라고 한다.

하지만, 어느 불로거<sup>9)</sup>는 ‘이승훈 베드로 영세, 이벽의 집에서 10여명 최초 대세 받음’이라고 하여 성직자가 정상적인 예식을 모두 집전하지 않은 세례는 대세라고 구분한다.

## 2. 현행 한국 교회에서의 대세에 대하여 세 가지 관점에서 정리

이러한 분석 내용을 종합하면 현재 한국 교회에서는 대세에 대하여 이렇게 정리된다.<sup>10)</sup>

### 1) 대세의 개념

대세는 정식 세례성사를 대신하여 비상시에 이루어지는 세례인데, 이는 육체적인 죽음의 위험만이 아니라 전쟁이나 박해 등으로 인하여 죽음의 위험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당연히 위급한 상황기에 예식을 생략하거나 약식으로, 정상 집전자인 성직자가 없는 경우<sup>11)</sup>에 비성직자가 주는 비상세례이다.

9)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bjoo912&logNo=221164990498>

천주교 조선전례/연표 2017년 12월 17일 작성.

10) 이 개념이 모두 맞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 부분은 연구 과정 중에 명확해질 것이다.

11) 하지만, 현재 사용하고 있는 어른 입교 예식서에서는 성직자도 이 예식을 사용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즉, ‘임종 세례는 특히 교리 교사나 평신도가 거행하도록 맞추어져 있다. 그러나 신부와 부제도 긴급히 필요한 때에는 이 예식을 사용할 수 있다’(3장 임종 세례, 280항). 물론, 죽을 위험이 있는 때 받는 세례이므로 단순히 임종 세례로 제한시킬 필요가 있는지는 뒷부분에서 더 고찰할 것이다. 하지만, 이 이후는 용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현행법전 이후의 내용은 ‘죽을 위험 중의 세례’로 표기한다.

## 2) 조건 대세

조건 대세는 이전에 유효한 세례를 받았었는지가 의심스럽거나, 대상자가 의식이 없거나 이미 선종하였는지 의심스러울 경우에 조건을 붙여서 하는 대세이다.

## 3) 보충 예식

많이 언급하지는 않지만, 보충 예식은 대세를 받은 사람이 건강을 회복한 뒤 교리 교육과 세례성사의 다른 부분을 보충하여 받는 예식으로서 이미 받은 세례를 다시 받는 것은 아니지만 세례 예식에서 못했던 부분을 채우는 예식으로 이해된다.

# II. 세례성사에 대한 두 법전의 기본 방향 비교

1917년의 비오-베네딕도 법전과 현재 효력을 발생하고 있는 1983년 현행법전은 세례성사를 다른 시각에서 바라본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와 1972년의 어른 입교 예식은 현행법전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시기별로 구분하여 간단히 논하고, 자세한 부분은 각 조항에서 심화시킨다.

## 1. 구 법전: 예식에 집중

가톨릭 역사상 처음으로 법전의 모습으로 편찬된 ‘1917년 비오-베네딕도 법전’은 고유한 체계를 가지고, 당시의 사상을 반영하여 교회의 여러 부분을 규정하였다. 성사 편에서 성사의 일반적인 부분들에 대하여 731~736조에서 규정하고, 첫 장인 세례 부분에서는 737절에서 기본적인 유효성과 구분을 말하고, 738~779조까지를 6개의 절<sup>12)</sup>로 나눈다.

구 법전은 ‘세례의 예식 자체에 집중’하여, 세례를 ‘성식세례’

12) 제1절 세례의 집행자, 제2절 세례의 주체, 제3절 세례의 전례와 의식, 제4절 대부모, 제5절 세례 수여 시기와 장소, 제6절 세례 수여의 기록과 증명.

(sollemnis)와 비성식(non sollemnis) 즉 ‘약식세례’(privatus)로 구분<sup>13)</sup>하는데, 이 기본적인 구분 아래에서 관계된 모든 부분이 정리된다. 성사 전반에 대해서 전례서의 규정을 ‘정확히’<sup>14)</sup>지키도록 하는데, 세례에 있어서는 조금 더 나아간다. 전례서에 규정된 모든 예식과 의식에 따라서 이루어졌을 때 성식세례라고 하며, 이 성식세례가 원형이다. 이 성식세례를 하지 못하는 경우 즉 전례서에 규정된 예식과 의식 중에 어떤 부분이 부족하면 비성식 즉 약식세례이다. 약식세례가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빠진 부분이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보충되어야<sup>15)</sup> 한다. 이렇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완성된 모습인 성식세례가 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 2.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는 초대 교회의 정신을 새롭게 해석하고 다시 소환하면서 교회를 개혁하고자 하였는데, 그 기초가 되는 부분이 바로 전례의 개혁이었다.

“성인의 단계적 입교 예비 기간을 복구시켜, 교구장의 판단에 따라 이를 다시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합당한 교리 교육을 위하여 지정된 세례 예비 기간은, 연속적으로 일정한 시기마다 거행되는 거룩한 예절에 의해서 성화되도록 해야 한다. [...] ‘성인들을 위한 두 가지 의식 즉 <간단한 의식과 보다 더 성대한 의식>은 복고된 세례 예비 기간에 상응하여 개정해야 하며’,<sup>16)</sup> 세례받는 사람이 다수일 경우에 사용할 의식, 죽음의 위험이 있을 때 일반적으로 신자

13) 구 법전 737조 (849) ② 세례가 전례서에 규정된 모든 예식과 의식에 따라 주어질 경우 「성식」(sollemnis)이라 일컫고, 그 밖의 경우는 「비성식」(non sollemnis) 즉 「약식」(privatus)이라 한다(Can. 737. § 2. Cum ministratur servatis omnibus ritibus et caeremoniis quae in ritualibus libris praecipiuntur, appellatur sollemnis; secus, non sollemnis seu privatus). 이 글에서는, 구 법전의 조항을 인용하는 경우 83법전과 비교되는 조항은 괄호 안에 조항을 넣고, 현 조항에 없는 경우는 (없음)으로 표시한다.

14) 구 법전 733조.

15) 구 법전 759조 3항.

16) SC 66. 새로운 사상에 따라서 기존의 성식세례와 약식세례를 개정하라는 의미이다.

들도 쓸 수 있는 짧은 세례 예절을 마련해야 한다. 어린이 세례에서 생략된 부분을 보충하는 예절(보례)이라 불리는 의식 대신에 새로운 의식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 의식에서는 짧은 예절로 세례를 받은 어린이가 이미 성교회의 품 안에 안겼다는 것이 더 명백히 또한 더 적절히 표현되어야 한다.”<sup>17)</sup>

새 예식서의 한국어판 서문이 이러한 공의회회의 정신에 대해서 잘 정리하였다. “어른 입교 예식서 제정에 대한 신학적 의미는 역사의 변천에서 찾아볼 수 있다. 로마제국이 그리스도교화됨으로 서기 6세기부터는 어른의 세례는 적어지고 어린이들의 세례가 주가 되어 자연 초대 교회로부터 이어 오던 어른들의 예비자 입교 예식은 단순한 세례 예식으로 대체되기 시작했다. 12세기에 와서는 예비자를 위한 예식은 완전히 없어지고 사전 교리 교육만으로 대체하여 제2차 바티칸 공의회까지 계속하여 왔다. 이제 어른 입교 예식서를 새로 제정하게 된 것은 포교지방이나 그리스도교 전통이 있는 나라를 막론하고 비그리스도교화 현상에 대처해 나가기 위한 방법으로서 처음부터 신앙을 튼튼히 한 다음 세례성사를 주었던 초대 교회의 정신을 되살려야 한다는 판단이 공의회를 통해서 내려졌기 때문이다”(1976년판 서문).

### 3. 새로운 예식서

이러한 공의회회의 결정에 따라서 경신성성이 새로운 예식서인 [어른 입교 예식](Ordo Initiationis Christianae Adultorum)을 준비하여 1972년에 반포하였다. 이 예식서는 기존의 [어른 세례 예식서](Il rito del battesimo degli adulti)를 대체한다. 1983년에 나온 새로운 법전은 이 예식서의 사상을 많이 이어받았고, 전례에 대한 규정은 전례서에 위임하였으며, 이 예식서 이후 교황청에서 새로운 예식서가 나오지 않았다. 따라서 이 예식서는 지금도 유효한 예식서로 평가받는다. 한국 교회에서는 이 표준판을 기준으로 하여 1976년에 한국

17) SC 64~70.

어판을 냈고, 2011년에 개정 시안을 냈다.

1) 이 새로운 예식서는 성식세례와 약식세례로 구별하던 기존의 방법을 개정하도록 하였다.<sup>18)</sup> 그리고 상황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예식을 준비하고, 적용하도록 하였다.

2) 그리스도교 입문이라는 커다란 개념 아래 입문 성사의 연결성을 강조하면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있다.

#### 4. 현행 83법전<sup>19)</sup>

요한 23세가 공의회의 개최와 함께 선언한 법전의 개정 작업은 공의회와 함께 시작되었지만, 공의회의 변화 때문에 중간에 잠시 멈추었다. 공의회 폐막 이후 공의회의 정신을 법 규범으로 담고자 노력하여 1983년에 법전이 반포되었다. 물론, 전례의 개혁도 이루어졌으며, 새로운 어른 예식서 이후에 나온 현행 교회법전은 이러한 사상을 바탕으로 하여 세례성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리스도교 입문의 개념이 강조되고, 기존의 성식세례와 약식세례의 구별과 보충 예식이 삭제되며, 조건부 세례가 단순하게 정리된다.

### III. 직접적으로 관련된 여러 항목들과 제안

#### 1. 그리스도교 입문 개념과 입문 성사의 연결성

1917년 법전에서는 세례성사와 견진성사, 성체성사의 연결성이 잘 드러나지 않고 각 성사가 개별적으로 다루어졌다. 그래서 구 법전에서는 그리스도교 입문이란 개념이 나타나지 않는다.

18) 신자는 될 수 있는 대로 죽을 위험에 있을 때에만 다음(278-294항)에 수록된 약식세례 예식에 따라 세례를 주어야 한다(그리스도교 입문 총지침 16항).

19) 법전 준비 과정 중에 세례성사에 관련되어서는 4번의 스케마가 준비되었다. 1975년 1판, 1977년 2판, 1980년판(802-832항), 1982년판(849-878p).

### 1)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는 1950년대에 회자되던 이 개념을 확인하여 전례헌장 71항 등 여러 문헌에서 그리스도교 입문에 관하여 언급하며, 세 개의 성사가 하나라는 점을 표현하고 있다. 이 그리스도교 입문 과정은 그동안 세례성사만을 준비하던 단순한 의미의 예비신자 기간과는 다른 개념이다. “그리스도교 입문은 오래된 것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것이다. 왜냐하면, 교회의 역사 속에서 4세기까지는 이 개념이 있었기에 오래된 것이며, 그 이후 사라졌다가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통하여 등장하였기에 새로운 개념이다.”<sup>20)</sup>

### 2) 1972년 어른 입교 예식

공의회의 방침에 따라 준비하여 1972년에 반포된 경신성성의 [어른 입교 예식]은 그리스도교 입문이라는 커다란 개념 아래 입문 성사의 연결성을 강조하면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그리스도교 입문 총지침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세례성사만이 아니라 그리스도교 입문 성사인 세례성사, 견진성사, 성체성사가 입교 성사로서 서로 결합되어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완전히 성장시키고, 교회와 세상에서 그리스도교 백성으로서 사명을 다하도록 해준다.”<sup>21)</sup> 입교 성사는 어른 세례 거행, 어른 견진 거행, 새 신자들의 첫영성체 참여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며,<sup>22)</sup> 이러한 연결성은 1장 단계별 어른 입교 예식에서 잘 나타난다.

새로운 예식서에 따르면 입교 예식은 3가지 단계 즉 예비신자로 받아들이는 때, 예비신자 기간이 끝날 무렵 성사들을 더욱 깊이 준비하게 하는 때, 입교하는 성사들을 받는 때로 나뉘어져 있다. 여기에 3가지 예식을 함께 포함하면 결국 4개의 기간으로 나타나게 된다. 가. 복음화와 ‘예비 신자 이전 기간’; 나. 예비 신자 기간; 다. 정화와 조명의 기간; 라. 신비 교육 기간. 이 ‘다’와 ‘라’사이에 ‘입교 성사들(세례, 견진, 성체성사)을 집전’하는 때가 있다.

20) Celeghin, A., «L'iniziazione cristiana nel CIC 1983», Periodica 84 (1995) 31.

21) 그리스도교 입문 총지침 2항.

22) 어른 입교 예식 지침, 라. 입교 성사들의 집전 27-36항.

| 그리스도교 입문 단계와 기간                 |                             |                                                                                            |
|---------------------------------|-----------------------------|--------------------------------------------------------------------------------------------|
| 단계                              | 기간                          | 예식                                                                                         |
|                                 | 가. 복음화와<br>'예비 신자<br>이전 기간' |                                                                                            |
| 1단계:<br>예비신자로<br>받아들이는 때        |                             | 1-1 제1단계 예비 신자로 받아들이는 예식:<br>가. 시작 예식<br>나. 말씀 전례                                          |
|                                 | 나. 예비 신자<br>기간              | 1-2 예비 신자 기간과 그 예식:<br>가. 말씀 전례<br>나. 소 구마 기도<br>다. 예비 신자 축복<br>라. 예비 신자 기간에 앞당겨 할 수 있는 예식 |
| 2단계: 성사들을<br>더욱 깊이<br>준비하게 하는 때 |                             | 2-1 제2단계 선발 예식 또는 이름 등록 예식                                                                 |
|                                 | 다. 정화와<br>조명의 기간            | 2-2 정화와 조명의 기간과 그 예식:<br>가. 수련식과 수여식<br>나. 최종 준비 예식                                        |
| 3단계: 입교하는<br>성사들을 받는 때          |                             | 3-1 제3단계 입교 성사들의 거행:<br>가. 세례 거행<br>나. 세례 설명 예식<br>다. 견진 거행<br>라. 성찬 전례                    |
|                                 | 라. 신비 교육<br>기간              | 3-2 신비 교육 기간                                                                               |

이렇게 보면 몇 예식은 입교 성사 거행 이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이고, 가장 중요한 입교 성사 거행은 3번째 기간의 마지막에 이루어진다. 그리고 세례성사와 견진성사 그리고 성체성사 이후에도 아직 입교 과정이 모두 끝난 것이 아니라 “입교 과정의 마지막 기간, 곧 새 신자들의 ‘신비 교육’기간으로 마치게 되는 것이다(37항)”.

이러한 변화에 따라 새로운 예식서가 만들어진 배경에 대해 1976년 한국어판 서문이 잘 설명한다. “어른 입교 예식서는 어른 세례 예식서라고 할 수 있으나 그렇게 부르지 않는 것은 영세 예비자들을 위한 단계적 예식과 세례 예식을 합한 것이기 때문이다. 과거의 예식서는 단순히 세례 예식을 위한 것뿐이었다.” 즉, 새로운 예식서

는 이전처럼 단순히 세례 예식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역사 안에서 잃어버렸던 초대교회의 정신을 되살리려는 바티칸 공의회 정신을 살리고자 제정된 것이다.

특수한 경우에는 간략한 예식을 사용할 수 있다.<sup>23)</sup>

### 3) 현행법전

현행법전 788조는 예비신자 교리교육 기간에 대해 말하는데, 예비신자가 잘 준비되어 전례 의식을 통하여 구원의 신비에 합당하게 입문되어야 한다. 이때 그리스도교 입문은 신앙과 전례, 하느님 백성의 애덕 및 사도직의 삶으로 인도되는 도입 부분으로 이해된다. 성사 개론 부분에 있는 842조 2항은 세례와 견진 및 성체의 성사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온전한 그리스도교 입문을 위하여 함께 요구된다고 한다. 851조 1항에서는 세례받기를 원하는 어른이 예비 신자로 받아들여지고 여러 단계를 거친 후에 받는 입교 성사를 표현한다. 866조에서는 성인의 경우에 세례받을 때에 중대한 이유로 방해받지 않는 한,<sup>24)</sup> 세례 후 즉시 견진받고 성찬 거행에 참여하여 성체도 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즉, 세례, 견진, 성체성사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며 그것도 동일한 전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교 입문은 세례로 시작되어서, 견진성사로 이어지고, 성체성사로 마무리된다.”<sup>25)</sup> 이상의 여러 조항들을 통해

23) 이 부분은 예식 부분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본다.

24) 안세환은 여기서 말하는 ‘중대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며 현재 한국 교회에서 성인 세례를 할 수 있는 신부가 견진을 동시에 줄 수 없도록 한 규정은 이 중대한 이유에 속하지 않음을 밝히고 있다. 안세환, 「세례와 다른 성사들과의 관계 — 죽을 위험 중에 있을 때 세례받은 사람을 중심으로」, 『사목연구』 42(2019/여름), 각주 142. (여기서 말하는 ‘중대한 이유’는, 예를 들어, 죽을 위험 중에 세례를 거행할 때 집전자인 사제가 축성 성유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축성 성유를 가지고 있어도 상황이 심각하여 견진 거행에 시간이 충분하지 못할 때, 혹은 세례 집전자가 사제가 아닌 부제나 평신도여서 견진을 거행할 수 없을 때를 말한다(참조: Elias Frank, *I sacramenti dell'Iniziazione, della Penitenza e dell'Unzione degli infermi: Commento ai Canoni 834-1007 del Codice di Diritto Canonico*, UUP, 2012, p.64, 각주 17).

25) Carrara, A., «Il rito del battesimo: struttura e teologia», *La Rivista del Clero Italiano* 82 (2001) 827.

서 보면, 현행법전이 공의회회의 규정을 바탕으로 하였음을 잘 알 수 있다. “법전 개정 위원회에서도 여러 논의가 있었는데, 이들은 그리스도교 입문과 견진성사와의 연결이 새로운 것이며 제2차 바티칸 공의회회의 결실임을 기억한다.”<sup>26)</sup>

하지만 유아 세례의 경우,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같은 예식에서 이 세 성사가 함께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오히려 유아 세례와 견진 성사 그리고 성체성사가 나누어져 다른 시기에 이루어진다. 하지만 예식은, 그리스도교 신자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것과 그것을 완성하는 것 사이에 연결이 되어 있는 점을 잘 살리면서, 다양한 단계로 이루어진다.<sup>27)</sup>

#### 4) 동방교회법전

1990년에 반포된 동방교회법전<sup>28)</sup>에서는 그리스도교 입문에 대해 더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다. 동방교회에서는 세 성사의 수여가 내적으로 하나인 점이 잘 보존되어 왔다. 이 점에서 과거와의 연속성이 더 나타난다. 695조 1항은 견진성사가 세례성사와 동시에 ‘반드시’(debet) 주어져야 한다고 말한다. 697조에서도 성체성사도 세례와 견진 이후에 바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한다. 696조 1항에서처럼 참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세 성사가 다른 때에 별도로 이루어질 수는 있지만 누구에게나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어서 지극히 엄격한 예외 조항이다. 이러한 동방교회법전에서는 다음의 결론이 나온다. 3성사가 동시에 거행되는 일치성, 그리스도교 입문 성사들이 명확하게 계속 이어짐, 세례로부터 견진성사를 분리하는 것은 예외임, 사제<sup>29)</sup>가 이 그리스도교 입문 성사의 집전자임.

26) Celeghin, A., 47.

27) Carrara, A., 827.

28) 동방교회의 특성상 자치 교회(Ecclesia sui iuris)의 규정을 따르도록 자주 언급한다.

29) 따라서 동방교회법전에서는 주교만이 아니라 신부도 견진성사의 집전자이다.

### 5) 한국 교회의 경신성성 교령 번역 문제

72년의 경신성성 교령에서는 ‘questa edizione che dovrà sostituire il rito del battesimo degli adulti finora incluso nel rituale romano’라고 말한다. 이 내용을 한국어 76년판에서는 ‘지금까지 사용하던 어른 세례 예식서 대신에 이 예식서를 로마 예식서에 삽입해야 한다’고 번역하였다. 이러한 번역상의 실수를 2011년의 개정 시안은 ‘이 예식서는 <로마 예식서>의 기존 어른 입교 예식을 대체하게 된다’로 바꾸었다. 하지만 원문은 ‘기존 어른 세례 예식’을 대체하는 것이다. 따라서 원문에 충실하게 수정하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이전의 예식서는 세례 예식만을 위한 것이었지만, 개정된 예식서는 좀 더 넓은 시각으로 바라보며 세례 예식을 포함하여 입교 예식과 입교 과정 전체를 함께 규정하기에 이 둘은 확실히 구별되기 때문이다.

### 6) 한국 교회 사목 지침서의 규정

살펴본 바와 같이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 초대교회의 모습을 담은 그리스도교 입문 과정이 중요하게 부각되었다. 이 과정 속에 여러 입문 성사가 함께 이루어지며, 그 의미를 나타낸다. 즉, 그리스도교 입문 과정 속에서 성인이 세례를 받는 경우 같은 전례 속에서 세례성사, 견진성사, 성체성사의 순서로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입문 과정이 강조되고, 가능한 여러 방법 속에 오래되었으면서도 새로운 신학이 구현되어야 할 것이다. 단계적 입교 예식을 기준으로 하되, 간략한 예식을 하더라도 전체적인 과정을 먼저 고려하고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살릴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현재 사용하는 95년 사목지침서 63조 세례 예식 2항에서는 어른에게 세례를 집전할 때, ‘가능하다면 단계적 입교 예식을 거행한다. 단계적 입교 예식을 모두 할 수 없는 경우, 간략한 입교 예식으로도 세례를 집전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주로 예식에 대한 것만을 고려한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제2장 성사’에서 총론을 다루면서 ‘그리스도교 입문 과정에 따라 신앙을 가르치고 입문 성사를 거행

한다'를 추가하여 강조할 필요가 있다.

## 2. 세례 예식의 구분

### 1) 17법전

전술한 바와 같이, 구 법전에서는 성식세례가 원형<sup>30)</sup>이고, 어려운 경우에 일부가 빠진 약식세례가 이루어진다. 구 법전 759조에 따르면, 죽을 위험이 있을 때 약식세례가 허가되며, 죽을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성인 이단자에 대한 조건부 세례를 주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약식세례가 허가되지 않는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죽을 위험이 있는 경우에 약식세례가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약식세례도 집전자와 상황에 따라서 예식이 달라지기도 한다. 성직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는 시간이 되는 한 세례 후의 의식까지 하고, 성직자가 아닌 경우에는 유효성에 필요한 것만 행한다. 세례 수여 때 빠진 의식은 될 수 있는 한 빨리 교회에서 보충되어야 한다.

### 2) 새 예식서

1972 어른 입교 예식은 기존에 성식세례와 약식세례로만 구별하던 것을 개정하였다.<sup>31)</sup> 상황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예식을 준비하여 5장으로 예식을 나누었다. 즉, 1장 단계별 어른 입교 예식; 2장 간략한 어른 입교 예식; 3장 임종 세례; 4장 유아 세례만 받고 교리 교육을 받지 못한 어른들의 견진과 영성체 준비; 5장 교리 교육을 받을 나이가 된 어린이들의 입교 예식. 그리고 부록으로 이미 유효하게 세례받은 이들을 가톨릭교회의 완전한 친교로 받아들이는 일차 예식을 준비하였다.

물론 통상적인 경우에는 단계별 어른 입교 예식이 이루어지고, 이때에는 '그리스도교 입문'이라는 사상이 그 밑바탕이 된다. 하지

30) 제755조 (없음) ① 세례는 성식의 방법으로 주지 않으면 안된다. 단 제759조의 규정의 적용을 막지 않는다.

31) 신자는 될 수 있는 대로 죽을 위험에 있을 때에만 다음(278~294항)에 수록된 약식세례 예식에 따라 세례를 주어야 한다(그리스도교 입문 총지침 16항).

만, 후보자가 특수한 사정으로 모든 입교 과정을 밟을 수 없거나, 후보자가 그리스도교 회개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고 종교적으로 성숙하여 곧바로 세례를 받을 수 있다고 지역 직권자가 판단할 때에는, 그때마다 간략한 예식을 사용하도록 지역 직권자가 허락할 수 있다.<sup>32)</sup> 이를 위해서는 후보자가 세례를 받기 전에 대부모를 정하고, 공동체의 집회에 참석한다.<sup>33)</sup> 또한 3장에서 성인의 입교에 대한 가장 짧은 예식<sup>34)</sup>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이는 두 가지 경우에 사용하는 예식으로 볼 수 있다. 즉, 죽을 위험이 가까이 있는 경우와 임종의 순간이다.

### 3) 83법전

83법전에서는 구 법전과 비교해서 ‘공의회와 새 예식서의 맥락에서’ 변화가 생겼다. 구 법전과 달리 성식세례와 비성식세례의 구별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는다. 새 법전에서는 이 구별이 완전히 폐지되었다.<sup>35)</sup> 850조를 통해서 두 경우 즉 통상의 경우와 위급한 필요성의 경우로 새롭게 구분한다.<sup>36)</sup> 구 법전이 세례의 예

32) 간략한 어른 입교 예식 240항. 이 예식은 *Ordo simplicior initiationis adulti* (*Rito più semplice dell'iniziazione di un adulto*)로서 구 법전에 있던 약식(*privatum*)과는 다른 개념이다.

33) 간략한 어른 입교 예식 241항.

34) *Ordo brevior initiationis adulti in proximo periculo vel in articulo mortis adhibendus* (*Rito più breve dell'iniziazione di un adulto in prossimo pericolo di morte o nell'imminenza della morte*).

35) Chiappetta는 ‘Nel nuovo Codice la distinzione è stata soppressa’라고 말한다. <Chiappetta, Il codice di diritto canonico II. 21~22>. 여기서 *soppressa*의 의미는 5조 1항의 ‘이 교회법 조문들의 규정에 어긋나는 현행의 관습들은 보편관습들이거나 개별 관습들이거나 이 법전의 조문들로서 채택되는 것은 완전히 폐지되어야 하고 후에 재생되게 허용되지 말아야 한다’ (§ 1. Le consuetudini vigenti al presente contro le disposizioni di questi canoni, che sono riprovate dagli stessi canoni di questo Codice, sono soppresse del tutto, né siano lasciate rivivere in futuro)에서 언급하는 것과 같은 의미일 것이다. 법전은 3조와 6조 등에서 *abrogare*, *derogare*란 단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36) 이 850조항에 따라서 가톨릭교리서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모든 사람이,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까지도, 세례 집전에 합당한 의향을 지니고 있는 경우, 성삼위의 이름이 명시된 세례 양식문을 사용하여 세례를 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1256 참조.

식을 기준으로 한다면 새 법전은 상황과 그에 따른 예식으로 구분하여, 예전의 구별이 폐지되고 다른 구별기준이 생긴 것이다. ‘정확히’<sup>37)</sup> 지켜져야 했던 구 법전의 규정이 조금 완화되면서, 승인된 전례서에 규정된 규칙대로 집전되어야 한다. 그러나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성사의 유효 요건들만 지켜도 세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sup>38)</sup> 따라서 유효 요건들만 지킨 세례도 완전한 세례로 인정된다.

#### 4) 새 예식서 한국어판에서의 번역 오류 수정

한국 교회는 개념을 혼란하게 가진 가운데 새로운 예식서를 다시 번역하였다.

“Il Concilio ha anche stabilito che, con la restaurazione del catecumenato, siano riveduti il rito solenne e il rito semplice del battesimo degli adulti.”

경신성의 교령 가운데 이 부분을 76년판에서는 ‘공의회는 또한 개정된 예비기간을 염두에 두고 어린 세례 예식을 성대한 예식과 약식 예식으로 개정하라고 명하였다’로 번역하였다. 하지만 2011년 판에서는 ‘또한 공의회는 예비 신자 기간의 복구에 따라 어린 세례를 위한 성대한 예식과 간략한 예식도 개정하도록 결정하였다’로 번역 상의 오류를 수정하였다.

#### 5) 사목지침서

현 사목지침서의 63조 2항에서는 단계적 입교 예식과 간략한 입교 예식에 대해 규정한다. 이 조항에서 직접적으로 표현되지는 않지만, 보충 예식 개념의 모호함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 법전의 성식세례와 약식세례의 구분이 폐지되었다는 점이 명확해져야 한다.

37) 구 법전 733조.

38) 제850조.

### 3. 대세 혹은 죽을 위험 중의 세례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구 법전에서는 일반적으로는 죽을 위험이 있는 경우에 약식세례가 이루어진다. 현행법전의 기조에서는 기존에 있던 성식세례와 약식세례로 구별하던 것을 개정하여, 통상의 경우와 위급한 필요성의 경우로 새롭게 구분하면서, 상황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예식을 준비하였다. 새로운 예식서에서는 3장에서 죽을 위험이 가까운 때와 임종의 순간에 사용할 수 있는 더욱 짧은 예식을 마련하였다.

이 죽음의 순간에는 왜 짧은 예식으로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이때 통상의 예식을 관면하는 것은 바로 교회의 최고 가치인 영혼의 구원 (*salus animarum*) 때문이다.<sup>39)</sup> 영혼의 구원이 최고의 가치이고, 이보다 앞서는 것은 없기에 다른 여러 조건들이 채워지지 않더라도 세례의 모든 예식을 다 하지 않고 유효성에 관계되지 않는 부분들은 관면을 해주는 것이다.

#### 1) 죽을 위험<sup>40)</sup>

죽을 위험이 있는 때는 언제인가? 법전은 그 의미를 정의하지 않는다. 이 위험은 가까운 시일 내에, 죽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많은 상황을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경우이다. 일시적인 압박을 받는 것도 아니며,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가까운 시기에 생길 수 있는 죽음의 위험이다. 더구나 이 죽음의 위험은 상상의 산물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현실적인 사실이 있어야 한다.<sup>41)</sup>

이러한 죽음의 위험이 있는 상황은 내적인 원인과 외적인 원인

39) Rivella, M., «Amministrazione e ricezione dei sacramenti in pericolo di morte. Il viatico», *Quaderni di Diritto Ecclesiale* 9 (1996) 314.

40) 참조: 이 죽을 위험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 안세환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안세환, 50~52쪽.

41) 참조: Renken, J. A., «Periculum Mortis: Danger of Death in Church Law», *Philippine Canonical Forum* 12 (2010) 69-99. (학자들 중에는 임종의 가능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이 있다.<sup>42)</sup> 내적인 원인은 병의 경우처럼 사람의 내적인 신체적인 조건 등에 의해서 위험이 생기는 것이다. 외적인 원인은 전쟁이나 박해 혹은 천재지변 같은 상황에 의해서 죽음의 위험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

이 죽을 위험에 놓인 사람의 상황은 당장 죽을 위험이 있는 것은 아닌 경우와 임종의 순간이 있을 수 있다. 새 예식서는 이를 구분하여 예식을 하도록 규정한다.

① 죽을 위험에 있는 이가 예비신자이건 아니건 당장 죽을 위험에 처한 것이 아니고 질문을 듣고 거기에 대답할 수 있다면, 가장 짧은 예식으로 세례를 받을 수 있다(278).

예비신자라면, 기력을 회복한 다음 통상적인 교리 교육을 받겠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

예비신자가 아니라면, 그리스도께 마음을 돌리고 미신을 끊어 버린다는 진지한 표시를 보여야 하며, 생활에 윤리적 장애가 없다고 판단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건강을 회복한 다음 자신에게 알맞은 모든 입교 과정을 밟겠다고 약속하여야 한다.

이 세례는 특히 교리교사나 평신도가 거행하도록 맞추어져 있다. 그러나 사제<sup>43)</sup>나 부제도 필요한 경우에는 이 예식을 사용할 수 있다. 더 나아가서 가능하다면 견진성사와 함께 영성체를 하도록 해야 한다.

② 이와는 달리, 죽음의 순간이 가까웠을 때 즉 임종의 순간에는 집전자는 다른 예식을 모두 생략하고 자연수를 병자의 머리에 부으며 세례의 성사 양식문을 말한다.<sup>44)</sup>

42) Rivella, M., 315.

43) 라틴어 'Presbyter'를 이탈리아어는 'sacerdote'로 번역한다. 하지만 한국어 번역 시 안은 이를 신부로 번역한다. 즉 주교는 빠진 개념이다. 280항: Attamen etiam presbyter et diaconus, in casu urgentioris necessitatis, hoc ritu uti poterunt (Tuttavia anche il sacerdote e il diacono, in caso di urgente necessità, potranno usare questo rito). 따라서 이 부분은 부제는 포함하지 않으면서 주교와 신부를 말하는 사제로 번역하여야 한다.

44) 이 부분은 최고로 짧은 예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이 예식이 한국 교회에서 말하는 대세의 예식일 것이다.

2) 집전자<sup>45)</sup>

구 법전에서는 누구나, 다만 부모는 특별한 경우에만, 약식세례의 집전자<sup>46)</sup>가 될 수 있었다.

죽음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 현행 라틴 교회에서는 올바른 지향을 가진 사람은 누구라도 심지어 미신자도 세례를 줄 수 있다(제861조 2항). 동방교회에서는 ‘세례받은 사람만’ 집전자가 될 수 있다.

## 3) 세례받을 자

구 법전에서는 죽을 위험이 있는 유아와 성인이 약식세례를 받을 수 있다. 특히 비신자들의 아이가 죽을 위험이 있을 때는 양친의 뜻을 거슬러서라도 적법하게 세례를 수여한다.<sup>47)</sup> 현행법전에서 죽을 위험 중에 있는 어른은 통상적인 경우보다 완화된 조건으로 세례받을 수 있다(865조 2항). 아기가 죽을 위험이 있으면 가톨릭 신자만이 아니라 비가톨릭 신자 부모의 의사를 거슬러서라도 지체 없이 세례받아야 한다(867조).

## 4) ‘대세’를 ‘죽을 위험 중의 세례’로

기존에 사용하여 오던 대세라는 단어는 모호함을 갖고 있고 혼란을 주고 있다. 게다가 ‘대세’라는 단어는 새로운 정신을 담기에는 부족하므로, 이제는 폐기해야 한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정신에 따라서 전례가 개혁되면서 새롭게 개편된 예식서에서 나타난 비상 상황과 그에 따른 짧은 예식을 잘 표현해야 한다. 게다가 상황만이 아니라 집전자와 예식까지도 모두 포함하는 명칭이 필요하다.

원래 새 예식서 3장의 이탈리아어 제목은 ‘Capitolo III. Il rito più

45) 이 집전자의 각 법전별 비교는 뒤에서 하게 될 것이다.

46) 제742조 (861) ① 제759조 제1항의 약식세례는 규정된 재료, 정한 말과 뜻으로써 누구라도 줄 수가 있다. 단 세례를 받은 것이 증명될 수 있기 위해서 둘 혹은 적어도 한 사람의 증인을 세우지 않으면 안된다.

47) 제750조 (868) ① 비신자들의 아이가 생명의 위험을 받아 이성을 사용할 수 있기 전에 죽을 것이 신중한 사례 끝에 예측되는 경우에는 양친의 뜻을 거스리더라도 적법으로 세례가 수여된다.

breve dell'iniziazione di un adulto in prossimo pericolo di morte o nell'imminenza della morte'이다. 두 경우에 모두 사용하는, 즉 죽음의 위험이 가까운 때와 임종의 순간에 하는 성인의 더 짧은 입문 성사 예식이다. 그런데 한국 교회의 번역 시안은 이를 '임종 세례'로 단 순화한다.

게다가 현행 사목지침서 55조는 임종 세례를 제목으로 하여 임종자가 의식이 있는 경우와 의식이 없는 경우를 구분하면서 죽을 위험 중에 있는 어른이 세례받을 조건을 말하고 있다.<sup>48)</sup> 임종의 상태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여기는 것처럼 보이며, 지침서 해설에서도 따로 언급하지 않기에 전쟁이나 박해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임종(臨終)의 사전적인 의미를 생각해보자. 임종은 운명 또는 종신(終身)이라고도 하며 그 원어는 임명종(臨命終)이다.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 번째 기본적인 의미(영어: one's end, one's deathbed)는 사람의 목숨이 끊어져 죽음에 이르거나 장차 죽을 때, 혹은 죽는 때를 말한다. 두 번째 의미(영어: attendance at one's parent's deathbed)는 부모가 돌아가실 때 그 곁을 지키며 모시는 것이다. 운명은 이승과는 이별이지만 저승의 관점으로 보면 새로운 존재로 출생하는 의미를 지니기에 임종은 이승과 이별하고 저승에서 새롭게 태어남을 지켜보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sup>49)</sup> 이런 두 가지 의미에서 보면 적어도 임종은 부모이거나 다른 사람이거나 죽음의 순간이 가까이 왔음을 전제로 한다. 즉,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죽음을 맞이하거나 생명을 이어간다는 의미보다는, 이미 죽음이 거의 확실하여 그 시

48) 남영도 죽을 위험 중에 있는 이들의 세례에 관해서는 현재 다양한 용어들이 혼용되고 있고, "대세"라는 용어가 관습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명확하지 않기에 한국 천주교 사목지침서에서 "임종 세례"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이 표현이 모호한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정해주는 것은 사실이기에, 이 표현으로 죽을 위험 중에 있는 이들의 세례와 관한 실제적인 현장들에 대해 이야기한다. 남영, 「죽을 위험 중에 있는 이들의 세례에 관한 교회법적 고찰」, 『가톨릭사상』 60(2020), 118~119쪽. 하지만, 필자의 생각에는 좀 더 확실하게 모든 개념을 최대한 함축할 수 있는 단어의 선택이 더 필요하다.

49) 참조: 인터넷; 한국학중앙연구원 — 향토문화전자대전.

간이 거의 다 된 상태를 말한다. 배가 난파된다든지 하는 것처럼 죽음의 위험이 있지만 구조가 되면 살 수도 있는 상태와는 달리, 죽음의 개연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서 죽음의 순간이거나 죽음이 아주 가까운 순간을 말하는 것이다. 임종은 죽을 위험이 있는 상태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개념이다.

따라서 현재 예식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임종 세례’라는 단어만으로는 부족하다. 단순히 주로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임종에 가깝거나 임종의 순간만을 지칭하게 되면 다른 상황들은 포함이 되지 않는다. 항해 중에 위험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처럼 죽을 위험이 있는 상황도 포함해야 한다.

한국교회에서는 2014년에 2000년에 발행된 <천주교 용어집>을 14년 만에 개정해 펴내면서 죽을 위험이 있는 이에게 짧은 예식으로 주는 세례를 ‘임종 세례’로 설명하고 있다. 이후의 한국천주교교세 통계표에서는 대세와 임종 세례를 혼용<sup>50)</sup>해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전국전산담당사제회의’에선 이와는 달리 ‘비상세례’라는 용어를 주교회의에 올렸고 전산에서도 사용하고 있다. 어차피 현재까지는 ‘대세’라는 용어가 한국 교회에 뿌리내리고 있고,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바꿀 것이라면, 이왕이면 정상적으로 모든 개념을 포함하는 용어가 당연하지 않을까? 적어도, ‘임종 세례’란 용어는 모든 상황을 포함하기는 부족한 단어이다. 그렇다면, 예식서나 사목지침서에서 임종 세례라는 항목을 ‘죽을 위험 중의 세례’로 바꾸어 사용하거나 다른 용어를 찾는 것이 좋겠다.

## 4. 보충 예식

### 1) 17법전

약식세례 예식을 하면 당연히 성식세례 예식에서 빠진 부분이

50) ‘한국 천주교회 통계 2018’ 세례 유형별로는 유아 세례가 23.4%(18,942명), 어른 세례가 70.3%(56,856명), 대세가 6.3%(5,107명)로 나타났다; ‘2019 한국 천주교회 통계’ 2019년 한국 교회의 영세자는 81,039명으로 유아 세례 22.0%(17,806명), 어른 세례 71.8%(58,198명), 임종 세례 6.2%(5,035명)로 나타났다.

생긴다. 이렇게 빠진 부분은, 이단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될 수 있는 한 빨리 교회에서 보충되어야(suppleantur)한다고 규정<sup>51)</sup>하였다. 더 나아가서 구 법전 760조는 조건부로 반복된 세례의 경우에서도 전의 세례에서 빠진 의식이 보충되도록 규정하였다. 이러한 규정의 바탕에는 약식세례 때 부족한 예식을 보충 예식으로 채우면, 성식 세례가 되면서 완전한 세례가 된다는 사상이 깔려 있다.

## 2) 새 예식서

1972년에 반포된 새 어른 입교 예식은 이전의 예식서와는 다른 바탕 위에 나온 예식서이다.

① 새 예식서에서 예식의 원형이라고 하는 단계별 어른 입교 예식은 앞의 표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3개의 단계와 4개의 기간으로 나누어진다. 그런데 입문 성사인 세례, 견진, 성체성사가 한 예식에서 동시에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

## ② 2장 간략한 어른 입교 예식 (Capitolo II. rito più semplice dell'iniziazione di un adulto)

간략한 어른 입교 예식은 맞이하는 예식, 말씀 전례, 세례 거행, 세례 설명 예식, 견진 거행, 성찬 전례 등으로 이어진다. 이 부분에서도 세례, 견진, 성체성사가 일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질병, 노쇠, 이주, 긴 여행 등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간략한 예식에 완전한 예식의 한 두 요소를 보충(보완)하는 것이 매우 좋다.<sup>52)</sup>

51) 제759조 (없음) ① 죽을 위험이 있을 때, 세례를 약식으로 주는 것이 허락된다. 또 사제나 부제도 아닌 집행자에 의해서 주어지는 경우에는 세례가 유효하기 위해 필요한 것만이 행하여진다. 사제 또는 부제에 의해서 주어질 경우에는 시간이 허락하는 한 세례 후의 의식까지 행하여져야 한다. ③ 더욱 여하한 이유를 불문하고 세례 수여 때 빠진 의식을 전향의 이단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될 수 있는 한 빨리 교회에서 보충되어야(suppleantur) 한다.

52) 274항. 제목에서도 확장한다는 의미의 *ampliare*를 보충 예식으로 표현하였다. 세례 예식 전체에서 보충 예식이라는 개념의 혼동을 가져올 수 있다(*il rito ampliato* 사. 간략한 어른 입교 예식과 함께 하는 보충 예식). 이 부분은 세례받은 사람에 대한

이 점에서는 완전한 예식을 중심에 두고 간략한 예식에서 가능하  
다면 완전한 예식의 부분들을 덧붙이기를 바라는 마음이 보인다.

③ 가장 짧은 예식<sup>53)</sup> (죽을 위험이 있거나 임종의 순간에 있는  
성인의 입교에 대한)

3장은 더 짧은 예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죽을 위험에 있거나  
죽음이 가까운 때에 세례를 받은 이들이 건강을 회복하면, 이들에  
게 알맞은 교리 교육을 시키고, 이들을 적절한 시기에 교회에 받아  
들여 어른 입교의 ‘다른 성사들’을 받도록 배려하여야 한다(282항).<sup>54)</sup>

이들이 건강을 회복한 경우에 교리 교육을 하고, 다른 성사들 즉  
견진성사와 성체성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미  
세례성사를 잘 받았기에 세례성사의 다른 예식이 필요하지 않다.  
오직 그리스도교 입문 성사의 연결성 때문에 견진과 성체성사를  
받으면 입문 성사가 완결된다.

하지만, 여기에 다른 조건을 담은 조항이 첨가된다. 즉, ‘이 경  
우에는 295~305항(유아 세례만 받고 교리 교육을 받지 못한 어른들의  
견진과 영성체 준비)에 정해진 원칙을 준수하면서 알맞게 적용하  
여야 한다’(282항).

이 원칙은 유아 세례만 받고 교리 교육을 받지 못한 어른들의 경  
우를 말하는데, 이들은 어려서 세례를 받았지만, 견진과 성체성사  
를 받지 못한 상태이다. 이미 세례를 받았기에 다른 예비 신자들과  
는 엄연히 구분된다. 다만, 교리 교육 등의 준비가 더욱 필요한 것  
이다.

그리고는 이들에게 예비 신자 기간의 고유 예식들 가운데 몇 가  
지, 곧 신경 수여식, 주님의 기도 수여식, 복음서 수여식 등을 거행

---

것이 아니라, 예비신자가 다른 사람들보다 과정이 늦는 경우 다른 이들과 함께 갈  
수 있도록 보완하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보완’으로 번역하는 것이 낫다.

53) 2011년 한국어판 개정 시안은 이를 임종 세례라고 번역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  
은 넓은 의미를 버리고 죽음에 가까운 경우에만 한정지은 좁은 의미만을 바라보는  
오역이다.

54) *Colore che [...] siano istituiti con una adatta catechesi e, accolti a tempo opportuno in  
chiesa, ricevano gli altri sacramenti dell'iniziazione.*

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서 참회 예식을 알맞게 거행하여 고해성사를 하도록 준비시켜야 한다. 가능하면 파스카 성야에서, 세례 신앙을 고백하고, 견진성사를 받고, 성찬례에 참여하도록 한다. 될 수 있는 대로 부활 시기에 견진을 받도록 배려한다. 이들은 신비 교육 기간을 지내면서 양성 과정을 마치고 신자 공동체에 완전히 들어가게 된다.

#### ④ 경신성성의 1973년 새 규정

1973년 3월 8일에 경신성성에서 이 부분을 해석하는 새로운 규정을 반포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sup>55)</sup>

영세자가 신앙 안에서 교육받지 않거나, 합당하게 살지 않거나, 신앙을 외적으로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세례는 반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교리교육을 받는다고 해도, 세례 후 교리 교육은 예비신자 교리 교육과는 다르다. 예비신자 교리교육이란 단어는 그 의미를 그대로 간직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받아들임(*elezione*)이란 단어도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교리 교육을 받지 않은 천주교 신자들의 상태는 예비신자들과 비슷하기에, 이들이 똑같은 교리 교육의 과정을 밟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미 세례를 받은 이’라는 것은 염두에 두어야 한다.

세례받은 이들의 교리 교육을 위한 전례는 교리교육 이후의 전례로 이해되어서는 안되며, 다음의 예식이 이루어질 수 있다. 공동체에 받아들여지는 예식(십자표나 받아들이는 예식이 가능하지만, 전혀 다른 의미로 이루어져야 한다), 말씀 전례(예비신자와는 다른 의미로), 수여식, 참회예절, 고해성사(고해성사가 세례성사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다), 견진성사와 성체성사. 그리고 이어서 그리스도교 신자로서의 양성이 계속되어야 한다.

#### 3) 83법전에서 보충 예식의 삭제

현행법전은 구 법전의 보충 예식에 대한 조항에 관련하여 아무

55) Notitiae 9, 1973, 274-278p. EV 4. 930p. 각주 부분.

런 언급도 하지 않는다. 이렇게 구 법전의 조항이 삭제되었을 경우, 완전히 폐지된 것인지, 수정된 것인지, 지금도 그대로 효력을 유지하는 지에 대해 해석의 차이가 생긴다.

교회법전개정위원회에서는 세례의 보충 예식 부분이 법에서 인정되지 않았다<sup>56)</sup>고 말한다. 따라서 필자는 현행법전에서 이 조항들이 모두 삭제가 된 것으로 해석한다.

#### 4) 한국 교회 사목 지침서의 규정

1995년 한국 교회 사목 지침서는 55조 3항에서 세례 보충 예식을 하라고 규정한다. “임종 세례자가 건강을 회복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교리교육을 실시하여 적당한 시기에 ‘세례 보충예식’을 거행하며 다른 성사도 받게 한다(어른 입교 예식서, 282항 참조)”. 그러나 위에서 보았듯이 이 조항의 근거인 282항의 규정은 세례를 보충하는 예식을 거행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아직 받지 못하여 완성하지 못한 입문 성사인 견진성사와 성체성사를 받도록 배려하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은 “죽을 위험 중의 세례를 받은 이가 건강을 회복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교리교육을 실시하여 적당한 시기에 필요한 세례 후 예식을 거행할 수 있으며 다른 성사도 받게 한다(어른 입교 예식서, 282항 참조)”. 혹은 세례 후 예식에 대한 부분을 생략하고 ‘적당한 시기에 다른 성사도 받게 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5. 조건 대세 또는 조건부 세례

세례성사를 주기에는 어떤 부분이 확실하지 않을 때 조건부로 세례<sup>57)</sup>를 준다. 이것을 조건 대세라고도 하였다. 시대에 따라 그 조

56) Communicationes 1971년 201. Non agitur in iure recognito de supplendis caeremoniis quae in baptismi collatione praetermissae fuerunt.

57) 남영은 조건부 세례가 문제가 된 역사적 과정에 대해서 잘 서술하고 있다. 남영, 112~113쪽.

건이 달라진다.

### 1) 17법전

17년 법전에서는 다양한 기준의 조건부 세례가 있었다.

#### ① 유효한 세례 수여 여부

7성사 가운데 세례, 견진 및 신품성사는 인호를 주는 성사이기 때문에 두 번 다시 할 수 없다. 하지만 실제로 또 유효하게 되었는지 의심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유효한 세례를 받았는지 여부가 합리적으로 의심이 될 때 조건부 세례를 준다.<sup>58)</sup> 버려진 아이의 경우 세례받은 사실이 확실하지 않으면 조건부 세례를 준다.<sup>59)</sup>

#### ② 생존 여부

태아, 조산아, 기형아<sup>60)</sup>의 경우, 생존 여부를 기준으로 여러 번 조건부 세례에 대하여 말한다. 살아있으면 정상적인 세례를, 생중이 불확실할 때는 조건부 세례를 준다.

#### ③ 성인의 세례 원의 여부

성인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원의가 있어야 하는데, 스스로 청

58) 제732조 (845) ① 인호를 주는 성사 즉 세례, 견진 및 신품은 두 번 다시 줄 수는 없다. ② 그러나 전향의 성사가 실제로 또 유효하게 주어졌는지 의심이 생길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조건부로 다시 주어야 한다.

59) 제749조 (870) 버린 아이를 주웠을 때는 상세한 조사에도 그 영세가 확지 안되면 조건부로 세례를 주어야 한다.

60) 제746조 (없음) (Communications 1975, 29~30) ② 태아의 머리가 노출되어 죽을 위험이 있을 때는 머리에 세를 붙일 수가 있다. 그 후 살아서 분만되었을지라도 다시 조건부 세례를 줄 필요는 없다. ③ 다른 지체가 나타났을 경우 죽을 위험이 있으면 그 지체에 조건부 세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분만 후 살아 있는 한 다시 조건부 세례를 받아야 한다. 제747조 (871) 모든 조산아는 여하한 시기에 분만되었어도 확실히 살아 있을 때는 무조건으로 또 불확실할 때는 조건부로 세례를 주어야 한다. 제748조 (없음) 기형아 및 몸덩어리는 적어도 조건부로 언제나 세례를 받지 않으면 안된다. 그것들이 한 사람인지 여러 명인지 의심스러울 때는 한 사람은 무조건으로 다른 것은 조건부로 세례를 주어야 한다.

할 수 없을 경우 이전에 영세의 뜻을 나타내었다면 조건부 세례를 준다.<sup>61)</sup>

#### ④ 세례가 조건부로 반복될 경우

조건부 세례가 다시 이루어질 경우, 전의 세례에서 빠진 의식이 보충되어야 하며, 전번 세례에서 의식이 이루어졌을 경우 다음 세례에서는 그것을 생략할 수도 반복할 수도 있다.<sup>62)</sup> 전번 세례에서 대부모를 썼으면 될 수 있는 한 같은 사람이 대부모가 되어야 하지만, 다른 조건 세례에는 대부모가 필요하지 않다.<sup>63)</sup> 동일한 사람이 대부모를 선다면 영친 관계가 생기지만, 다르다면 그렇지 않다.<sup>64)</sup>

### 2) 83법전

구 법전에서 여러 조건이 있던 것과 달리, 현행법전에서는 조건부 성사 수여에 대하여 한 가지 상황만을 제시한다. 즉, 현행 법전에서 조건부 세례는 세례성사를 실제로 또는 유효하게 받았는지가 지극히 의심스러울 때 이루어지는 세례이다(845조 2항; 869조 1항).

또한 비가톨릭 교회 공동체에서 세례받은 이들의 세례에 대해서는 논란이 될 수 있다. 통상적인 경우에는 이들이 조건부로

61) 제752조 (851, 865) ③ 성인이 세례를 청할 수가 없는 경우에도 만일 이전에 또는 현재, 근거 있는 무슨 방법으로 영세의 뜻을 개연적으로 나타내었다면, 조건부의 세례를 주어야 한다. 그 후 그자가 회복되어 받은 세례의 효력에 관해서 의문 있을 때는 다시 조건 세례를 주어야 한다.

62) 제760조 (없음) 세례가 조건부로 반복될 경우, 전의 세례에서 빠진 의식은 보충되지(suppleantur) 않으면 안된다. 이때 제759조 제3항의 규정의 적용을 막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전번 세례에서 의식이 행하여졌을 경우에는 다음 세례에서 그것을 생략할 수도 반복할 수도 있다.

63) 제763조 (없음) ① 세례가 조건부로 반복될 경우, 전번 세례에서 대부모가 썼으면 될 수 있는 한 같은 대친을 세우지 않으면 안된다. 그 밖의 조건 세례에 있어서는 대친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64) 제763조 (없음) ② 세례를 조건부로 반복할 경우, 두 세례에 있어서 동일한 대부모를 세울 수 없는 한 전번 세례 때 선 대친도 다음 세례 때의 대친도 영적 친족이 되지는 않는다.

세례받지 아니하여야 한다.<sup>65)</sup>

### 3) 현행법전 이외의 조건부 세례

현행법전에서 유일한 조건부 세례와는 다른 의미의 조건부 세례가 있다고 말하는 학자도 있다. 특히 죽을 위험 중에는 신앙생활에 관해 기본적인 것만 알면 되지만, 적어도 세례를 받겠다는 원의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 세례를 받을 의지가 의심이 갈 때도 있다. 이때 ‘만약 세례받기를 원한다면’이라고 조건부 세례를 한다고 주장한다.<sup>66)</sup>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조건들이 특히 죽을 위험이 있을 때 생길 수 있다.

예비신자가 죽을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평소에는 세례에 대해서 전혀 언급도 하지 않던 사람이 의식이 없이 죽을 위험에 있는 경우에 현실적인 문제가 생긴다. 원칙적으로 신앙에 대한 표시와 윤리적 장애가 없어야 하며, 건강회복 후 입교 과정을 밟는다는 약속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러한 것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러한 생각을 하였을 거라는 가능성도 전혀 없다. 하지만, 가족 중에 신자가 있는 상황에서는 ‘죽을 위험 중의 세례’를 주는 것이 현실이다.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지만, 때로는 세례를 받지 않고 선종하면 사실상 교회 공동체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때로는 건강을 회복한 후에 자신은 세례 받은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경우도 생긴다. 이때 ‘그가 세례를 받을만하면’이라는 조건을 붙이는 것이 가능할까? 더 나아가서, 예를 들어 사망 후 1시간 정도가 흐른 뒤에 ‘만약 살아있다면’이라는 조건이 붙을 수도 있다.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부분이다.

65) 제869조. 2. 비가톨릭 교회 공동체에서 세례받은 이들은 조건부로 세례받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그 세례 수여 때에 사용한 재료(질료)와 말의 형식을 조사하고 또한 세례받은 어른 본인과 세례 준 교역자의 의향을 검토한 후 세례의 유효성에 대하여 의심할 만한 중대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66) 참조: Renken, J. A.

#### 4) 사목지침서에서 비가톨릭 교회 공동체에서 세례받은 이들의 세례

869조의 규정처럼 통상적인 상황에서는 비가톨릭 교회 공동체에서 세례받은 이들이 조건부로 세례받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한국 교회 사목지침서는 4관 비가톨릭 신자의 세례(58조-62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성공회의 성직자가 집전한 세례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 성공회 이외의 기타 개신교 교파의 교역자가 집전한 세례는 그 유효성이 의심된다. 세례의 사실이나 그 유효성이 의심되는 비가톨릭 신자가 가톨릭교회로 입교하는 경우에, 어른이면 세례성사에 관한 교리를 설명하고 또한 이미 받은 세례의 유효성이 의심스러운 이유를 밝힌 다음 조건부 세례를 주고, 어린이이면 그 부모에게 위에 언급한 설명을 한 다음 조건부 세례를 준다.” 따라서 성공회 이외의 기타 개신교 교파의 세례는 의심스러워 조건부 세례를 주도록 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현실에서는 예비신자 교리를 배우면서 다른 이들과 같이 세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현행 사목 지침서에서는 이들의 세례를 의심하는 시각이 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주교회의에서 논의하고 교회 일치의 차원에서 새로 규정<sup>67)</sup>되었다. 먼저, 일반적으로 이들의 세례를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한국의 현실을 고려하면 성공회와 함께 정교회의 세례는 인정한다. 그 이외의 비가톨릭 그리스도교파의 세례는 무조건 유효성이 의심된다고 강하게 부정하기보다는 질료와 형

67) 비가톨릭 그리스도교파의 세례 유효성 관련 사목 지침 —주교회의의 2012년 추계 정기총회 — 1. 성공회와 정교회에서 세례 받은 것이 확인되면 인정한다(교회법 제 869조 2항; 「동방 교회 교령」 27항;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제58조 참조). 2. 그 밖의 비가톨릭 그리스도교파의 경우에는 물론 씻는 ‘예절(질료)’과 천주 성삼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형식(형상)’을 확인할 수 있으면 인정한다(교회법 제869조 2항;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제59조 참조). 3. 1항과 2항에서 세례 사실의 확인 방법은 세례증명서, 세례 때의 사진, 증인 등 하나라도 있어야 한다. 4. 세례 사실의 확인이 불가능하면 교리교육과 보충예식(세례명, 도유 등)이 필요하며 조건부 세례를 준다(교회법 869조 1항;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제61조 참조). 5. 1항과 2항처럼 유효하게 세례 받은 비가톨릭 그리스도교파 신자도 가톨릭 교회로 입교하는 경우에는 “성체성사와 고해성사를 포함한” 일정한 교리교육을 받고 어른 입교 예식서에 규정된 ‘일치 예식’을 거행한다(「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제62항 참조).

상을 확인하라고 한다. 그리고 유효성에 대하여 의심할 만한 중대한 이유가 있으면 조건부로 세례를 받게 한다. 이렇게 변화된 방향이 사목지침서를 개정하면서 더 깊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 IV. 기타 관련된 부분들과 제안

### 1. 집전자

구 법전에서는 세례의 종류에 따라 집전자가 다르다.

성식세례: 구 법전은 성식세례에서 정규(통상) 집전자와 비정규(임시) 집전자로 구분한다. 통상 집전자는 사제<sup>68)</sup> 즉 신부와 주교이며, 임시 집전자는 부제<sup>69)</sup>이다.

약식세례: 약식세례의 집전자<sup>70)</sup>는 누구나 될 수 있다. 다만 부모는 자기 자녀에게 죽을 위험이 있고 세례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만 약식세례를 줄 수 있다.<sup>71)</sup>

현행법전에서 정규 집전자 부분에서 큰 변화가 생겼다. 부제를 정규 집전자로 포함하게 된 것이다. 이제 정규 집전자는 성직자 즉 주교, 신부, 부제이다.<sup>72)</sup> 동방 교회법전은 이와 다르게 사제 즉 주교와 신부만 정규집전자이기에 부제는 포함되지 않는다.

정규 집전자가 없거나 장애되는 경우에 라틴 교회에서는 올바른

68) 제738조 (857, 861) ① 성식세례의 통상 집행자는 사제이다. 이 수역은 본당 신부나 교구 재치권자의 허가에 의한 다른 사제가 간직하고 있다. 단 필요한 경우는 추정적 허가로서 족하다.

69) 제741조 (61) 성식세례의 임시의 집행자는 부제이다.

70) 제742조 (861) ① 제759조 제1항의 약식세례는 규정된 재료, 정한 말과 뜻으로써 누구라도 줄 수가 있다. 단 세례를 받은 것이 증명될 수 있기 위해서 둘 혹은 적어도 한 사람의 증인을 세우지 않으면 안된다.

71) 제742조 (861) ③ 부모는 자기 자녀에게 죽을 위험이 있고, 달리 세례를 줄 사람이 없는 경우 외에는 세례 주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다.

72) *Communicationes* 1975년판은 이와 관련된 근거 문서들을 제시한다. <*Communicationes* 1975년. 29.> 부제들의 직무에 대한 바티칸 공의회 교의(LG 29), 자의 교서 *Sacrum Diaconatum Ordinem*, 18 jun 1967, 22, 새로운 세례 예식서 등.

지향을 가진 사람은 누구라도 심지어 미신자도 세례를 줄 수 있지만(제861조. 2), 동방 교회에서는 먼저 부제, 그가 없거나 방해된다면 다른 성직자, 그리고 축성생활회 회원 또는 그리스도교 신자인 다른 사람에 의해서 세례가 이루어진다.<sup>73)</sup> 죽음의 위험처럼 필요한 경우에도 특히 ‘세례받은 사람만’ 집전자가 될 수 있다.

보통의 경우 정규 집전자가 세례를 집전한다. 하지만, 그가 없거나 방해되는 경우에는 정규집전자가 아닌 이가 세례를 집전하게 되는데, 이들은 ‘세례의 비정규 집전자’라고 말할 수 있다.<sup>74)</sup>

## 2. 세례받을 자

구 법전에서 성식세례를 받을 자는 아직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으로서, 유아와 성인으로 구분된다.<sup>75)</sup> 성인은 세례를 이해하고, 원하며, 충분히 준비되었고, 세례 시 죄를 통회하도록 권고되었어야 한다.<sup>76)</sup> 약식세례를 받을 수 있는 이는 죽을 위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유아와 성인 모두 해당된다. 특별히 비신자들의 아이가 죽을 위험이 있을 때는 양친의 뜻을 거슬러서라도 적법하게 세례를 수여한다.<sup>77)</sup> 성인이 죽을 위험 중에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그것들을 인정할 것과 무슨 방법으로라도 표시하고 또 그리스도교의 계명을 지킬 것을 성실히 약속하는 것만으로 족하다.<sup>78)</sup>

73) 동방교회법전 677조 2항.

74) Costoro vengono chiamati ministri straordinari del battesimo (Franco Bolognini, Lineamenti di diritto canonico, 245쪽).

75) 제745조 (852, 864) ① 아직 세례 받지 아니한 모든 사람만이 세례 받을 수 있다. ② 세례에 관해서는 1. 유아란 제8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직 이성을 작용하기에 이르지 않는 자를 말한다. 유아기부터의 정신병자는 나이 여하를 불문하고 유아와 같은 자로 본다. 2. 성인이란 이성을 작용할 수 있는 자이다. 이들은 자발적으로 세례를 요구할 수 있고 또 그것을 허락함으로써 족하다.

76) 제752조 (851, 865) ① 성인이 세례를 이해하고 또 원하며 거기에 대한 준비가 충분히 되어있지 않는 한 거기에 세례를 주어서는 안된다. 또 세례를 줄 때에는 죄를 통회하도록 권고하지 않으면 안된다.

77) 제750조 (868) ① 비신자들의 아이가 생명의 위험을 받아 이성을 사용할 수 있기 전에 죽을 것이 신중한 사례 끝에 예측되는 경우에는 양친의 뜻을 거스를지라도 적법으로 세례가 수여된다.

현행법전에서 어른이 세례받기 위해서는, 세례를 받을 의사를 표시하고 신앙의 진리와 그리스도교인의 의무를 충분히 배우며 예비신자 기간을 통하여 그리스도교인 생활을 인정받아야 한다. 또한 자기 죄에 대하여 뉘우치도록 권유되어야 한다(865조 1항). 죽을 위험 중에 있는 어른은 신앙의 주요한 진리에 대한 지식이 조금 있고 어떤 모양으로든지 세례를 받으려는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그리스도교의 계명을 지키겠다고 약속하면 세례받을 수 있다(865조 2항).

어린이의 세례와 관련해서는 부모는 아기들이 태어난 후 몇 주 내에 세례받도록 힘써야 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아기가 죽을 위험이 있으면 지체없이 세례받아야 한다(867조). 가톨릭 신자 부모들뿐 아니라 비가톨릭 신자 부모들의 아기도 죽을 위험 중에는 부모의 의사를 거슬러서라도 적법하게 세례받을 수 있다(868조 2항).

### 3. 대부모

구 법전에서는 성식세례를 받으려면 가능한 한 각자의 대부모가 있어야 한다.<sup>79)</sup> 약식세례에서도 쉽게 할 수 있으면 세워야 한다. 그러나 약식세례 때에 대부모를 세울 수 없었다면, 보충 예식 때에 세워야 한다.<sup>80)</sup>

현행법전에서 대부모가 세례식에 참여하지 못하면 세례의 수여가 증명될 수 있는 증인이 있어야 한다. 구 법전에서 규정했던 ‘보충예식에서 대부모가 참석하는 조항’은 삭제되었다.

78) 제752조 (851, 865) ② 성인이 죽을 위험에 있어 신앙의 주요한 현의에 관하여 자세히 가르칠 수 없는 경우, 세례를 주기 위해서는 본인이 그것들을 인정할 것과 무슨 방법으로 표시하고 또 그리스도교의 계명을 지킬 것을 성실히 약속하는 것만으로 족하다.

79) 제762조 (872) ① 누구라도 대부모를 얻을 수 있는 경우에는 교회의 고래의 관습에 따라, 각자의 대부모를 세우지 않고서는 성식으로 세례를 받을 수가 없다.

80) 제762조 (872) ② 약식세례에 있어서도 대부모를 쉽게 얻을 수 있으면 이것을 지켜야 한다. 대부모를 세우지 않았을 경우에는 세례의 의식을 보충할 때에 대부모를 세워야 한다. 단, 이 경우에는 아무런 신친 관계도 생기지 않는다.

#### 4. 세례 예식의 장소 및 기록과 증명 책임

세례가 이루어지는 장소에 대한 규정을 보면, 일반적인 상황에서 세례는 영세자가 소속된 본당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 점은 두 법전의 규정이 같다. 구 법전은 773조<sup>81)</sup>에서, 현행법전은 857조 1항에서, 세례의 장소가 성당이나 경당임을 말한다. 구 법전이 이 점만을 말하여 약간의 해석의 여지를 남겨놓은 반면, 현행법전은 2항에서 어른은 자기의 소속 본당에서, 그리고 유아는 부모의 소속 본당에서 세례받는 것이 원칙임을 명확하게 한다.

그러면서 현행법전은 857조 1항과 2항에서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다만 정당한 이유로 달리하여야 하면’이라는 표현을 덧붙여서 소속 본당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예외적으로 세례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명시한다.

구 법전 777조에서는 본당 신부가 영세자의 성명 등을 세례대장에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sup>82)</sup> 여기서 말하는 본당 신부는 세례가 거행된 곳이 아니라 영세자가 소속된 본당의 본당 신부를 말한다. 하지만, 현행법전 877조는 이와는 반대로 세례가 거행되는 곳의 본당 사목구 주임이 세례 대장에 기재하도록 규정한다. 즉, 세례 대장에 기록할 책임 더 나아가서 세례 사실을 기록하는 세례 대장이 있는 곳은 영세자의 소속 본당이 아니라 세례가 이루어지는 본당이며, 그 책임자는 세례 성사가 이루어지는 본당의 주임 신부이다.

이러한 일반 규정에서 예외가 되는 경우 즉 세례가 소속 본당이 아닌 곳에서 이루어졌을 때, 그 기록을 어디에 하여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두 법전이 달리 규정하여 커다란 변화가 생겼다. 구 법전에서는 778조<sup>83)</sup>에서 영세자의 소속 본당에 보고하도록 규정하였다.

81) 제773조 (857) 성식세례를 주는 본래의 장소는 성당 또는 공적 경당의 세례소이다.

82) 제777조 (877) ① 본당 신부는 지체없이 영세자의 성명, 영세 일시, 장소 및 집행자, 양친, 대부모의 성명을 세례부에 정확히 기록하지 않으면 안된다.

83) 제778조 (878) 세례가 소속 본당 신부에 의하지 않고 또 그 입회도 없이 주어진 경우에, 집행자는 그 수여에 관하여 되도록 빨리 영세자의 주소가 소속하는 본당 신부에게 보고하지 않으면 안된다.

하지만, 현행법전은 878조에서 세례가 집전된 본당의 주임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한다. 즉 구 법전은 소속 본당 이외에서 세례가 거행된 경우 영세자의 소속 본당에 보고하고 기록하도록 한 반면, 현행법전은 거행지의 주임 신부에게 보고하여 기록되도록 하고 있다. 결국 세례의 기록 장소와 그 책임자가 소속 본당이 아니라 세례가 거행된 장소가 속한 본당과 그 주임 신부로 바뀌게 된 것이다. 혼인 성사의 경우에도 혼인 거행지 본당에 혼인 서류가 보관된다. 이렇게 구 법전 778조에서 소속 본당 신부가 아닌 집전자가 영세 사실을 소속 본당으로 통지하도록 했던 의무를 없앴으로써 생긴 변화의 효과로는 ‘535조 2항에 따라서 해야 하는 여러 기록들에 관계되어서 이중 기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sup>84)</sup>

하지만, 한국 교회에서는 교적이 관련되어 있기에 집전자 혹은 거행지 본당 신부가 소속 본당 신부에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다만, 통지의 효과가 달라진다. 즉, 구 법전에서는 소속 본당에서 세례 대장에 기록하고 교적을 만들어야 하는 반면, 현행법전에서는 거행지 본당에서 세례 대장에 기록하고, 교적은 결국 소속 본당에서 만들어지게 된다.

이러한 규정의 변화를 전제로 하고, 죽음의 위험 중에 세례를 받았을 경우에 적용하여 보자.

본당에 주소지를 둔 사람이 소속 본당 사목구를 벗어난 병원에서 위급한 상황에서 세례를 받고 싶다는 원의를 표현했을 때를 가정해 보자. 첫 번째 경우는 소속 본당으로 연락이 가고, 소속 본당의 성직자나 수도자 혹은 평신도 봉사자가 세례를 주러 간다. 두 번째 경우는, 혹시 있다면 그 병원 전담 성직자나 수도자 혹은 간호사나 평신도 봉사자가 세례를 줄 수도 있다. 소속 본당에서 누군가가 자신의 관할 지역이 아닌 곳으로 가서 세례를 주었을 경우, 세례 후에는 그 사실을 그 사람이 적어서 소속 본당 사무실로 가져와서 소속 본당의 세례 대장에 기록하도록 한다. 두 번째 경우에는 세례를 준 병원 관계자가 먼저 그 병원 자체에서 기록을 하고 그

84) 참조: Mostanza A., Battesimo, in Nuovo dizionario di diritto canonico, 89.

기록을 영세자의 소속 본당으로 보내어 소속 본당의 세례 대장에 기록하도록 한다. 이 방법은 모두 소속 본당을 중심으로 한 것이고, 소속 본당에 영세 사실에 대한 기록 책임이 있게 되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영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소속 본당으로 가야 하는 것이다. 거기에 덧붙여져서 한국 교회에서 사용하는 교적도 만들어진다. 상황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영세자의 소속 본당에서 작성한 세례 대장에 근거하여 소속 본당에서 교적을 작성한다. 하지만, 이러한 행정 처리는 구 법전에서 규정한 방식을 따른 것이다.

현행법전에 따라서 행정을 하면 이렇게 변화할 것이다. 같은 상황에서, 소속 본당 사목구를 벗어난 병원에서 위급한 경우에 세례를 받는 것이다. 첫 번째 경우 즉 집전자가 소속 본당 사람이다. 두 번째 경우는, 병원 관계자가 세례를 주는 것이다. 이 두 가지 경우에 공통적으로 성사 거행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그러면 일단 병원 자체에서 기록이 되고, 그 사실을 그 병원이 있는 본당으로 알려, 거행지 본당 세례 대장에 기록된다. 집전자는 영세자의 주소가 있는 소속 본당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거행지 본당이 세례 사실 기록의 책임이 있는 것이다. 즉 현행법전에서는 성사 거행지 본당을 중심으로 한 것이고, 거행지 본당에 영세 사실에 대한 기록 책임이 있게 되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 영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거행지 본당으로 가야 하는 것이다.

거기에 덧붙여져서 한국 교회만 있는 교적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거행지 본당에서 영세자의 소속 본당으로 알려주고 그에 따라서 소속 본당에서 교적을 작성한다. 이때 거행지 본당에서 소속 본당으로 세례증명서를 보내서 세례 사실을 기준으로 교적을 만드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먼저 거행지 본당에서 세례대장을 기준으로 하여 교적을 작성한 후에 소속 본당으로 전출하는 방법이 있다. 이는 한국 교회만의 특수성을 감안한 행정 조치이다.

하지만, 소속 본당 신부가 다른 구역에 가서 세례를 했을 때 마지막에는 결국 자신의 본당에 교적이 있게 될 것을 돌아서 처리하

게 되는 복잡하고 귀찮은 결과가 벌어질 수 있다.

현재는 이 두 가지 방법이 혼용되어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 교회가 법전 규정의 변화에 따라 정리해야 할 때이다. 사실 이미 사목 지침서는 이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제65조 (세례 기록) 1항 세례가 집전된 장소의 사목구 주임은 세례 사실을 지체없이 세례대장과 교적에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교회법 제877조 1항; 입교절차 총지침, 29항 참조)”. 다만, 이 기준에 따라 행정적인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잘 교육해야 한다.

## 5. 거행 장소 중 병원

구 법전에서 성식세례의 본래의 장소는 성당이나 경당의 세례소이다. 개인의 주거지에서는 국가 원수나 계승자가 자녀나 손자의 세례를 정당히 요구할 때와 기타 교구 재치권자가 허가해주는 경우에만<sup>85)</sup> 가능하다. 여기에 병원은 언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절박한 필요가 있을 때는 어떠한 시간과 장소에서도 약식세례가 이루어져야 한다.<sup>86)</sup>

현행법전은 개인 집에서는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세례를 수여하지 못한다. 부득이한 경우의 판단에 대해서는, 국가 원수 등에 대한 부분은 삭제하고, 교구 직권자가 중대한 이유로 허가할 때로 한정한다(제860조 1항). 그런데 이 장소 부분에서 병원을 특별히 언급한다. 일반적으로 병원에서도 세례를 할 수 없지만, 교구장이 달리 정하면 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한국 교회에서 이러한 점은 규정하지 않고 있는 듯하다. 달리 정하지 않았기에 불법으로 세례가 이루어지는 일이 발생한다.

85) 제776조 (860) ① 그러나 개인의 주거에서의 세례는 다음의 경우 외에 주어지는 안된다. 1. 현재 국민의 원수이든지 또는 그 계승권을 가진 자가 자기의 자녀 또는 손자의 세례에 관해서 정당하게 요구할 경우. 2. 교구 재치권자가 그 양심과 현명한 판단에 의해서 정당하고 또 합리적인 이유에 따라 어떤 특별한 장소에 허가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86) 제771조 (없음) 약식세례는 절박한 필요가 있을 때는 여하한 시간과 장소에서도 이것을 수여하지 않으면 안된다.

물론 이 이외에도 부득이한 경우나 그 밖의 사목상 이유로 긴요할 때는 할 수 있다. 바로 이 점에서 ‘죽을 위험 중의 세례’가 자리를 잡는다.

## 6. 비신자 부모의 아이 세례

세례가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필요하기에 유아가 죽을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세례를 받도록 해야 한다. 물론, 부모가 가톨릭 신자라면 수월할 것이다. 하지만, 비신자 부모 즉 세례받지 않은 부모의 아이가 죽음의 위험에 닥쳤을 때 세례를 주어야 하는가?

구 법전에서는 양친의 뜻을 거스를지라도 세례가 적법하게 수여된다<sup>87)</sup>고 하였다. 그 이후 사회가 변하면서 많은 논란이 생겼다.

1971년에 준비된 초안은 기존의 규정과 정면으로 반대되는 것이었다. ‘죽을 위험에 있고 죽을 것이 예견되는 어린이들은 부모 모두가 혹은 그를 대신하는 이가 명백하게 반대한다면 합법적으로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다.’ 이 이유는 신앙의 행위는 의지적인 행위이기에 그 의지가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부모가 이를 반대하면 신앙의 행위가 아니다.<sup>88)</sup> 그러나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현행법전의 868조 2항으로 결정되었다. 즉, 가톨릭 신자 부모들뿐 아니라 비가톨릭 신자 부모들의 아기도 죽을 위험 중에는 부모의 의사를 거슬러서라도 적법하게 세례받을 수 있다.

따라서 구 법전과 비교하여 보면, 구 법전에서는 비신자들의 아이라고만 하던 것이 세례받은 이들의 아이도 포함하면서 그 범위가 넓어졌다. 또 예전에는 의무 조항이었던 것이 현재는 ‘적법하게 세례받는다’로 완화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이 종교자유 원칙과 공의회 의 성사 규정 원칙하고도 어긋나기에 조심해서 실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학자<sup>89)</sup>도 있다.

87) 제750조 (868) ① 비신자들의 아이가 생명의 위험을 받아 이성을 사용할 수 있기 전에 죽을 것이 신중한 사례 끝에 예측되는 경우에는 양친의 뜻을 거스를지라도 적법하게 세례가 수여된다.

88) *Communicationes* 1975년 30.

## 7. 관계된 성사 대장 정리

현재는 유아세례대장, 보례대장, 대세자대장 등이 사용되고 있다. 이 대장들은 보충예식이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보충예식(보례)을 없애는 순간 이렇게 구분하는 의미가 없다.

## 8. ‘죽을 위험 중의 세례’에 대한 관계자 교육<sup>90)</sup>

‘죽을 위험 중의 세례’를 주는 상황은 사제나 수도자보다는 평신도가 더 많이 만난다. 그 가운데에서도 병원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그 상황에 더욱 가까이 있게 된다. 이들에게 세례에 대한 일반적인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죽을 위험 중의 세례’를 주는 방법과 그 이후의 행정적인 절차까지 잘 교육할 필요가 있다. 각 교구에서 힘들여 만들기보다는 주교회의 차원에서 이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지침서를 제시하거나 동영상 등을 통한 자료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서 가톨릭 간호사회나 의사회 등의 조직을 잘 활용한다면 더욱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것이다.

## 나가는 말

지금까지 구 법전과 바티칸 공의회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대세(임종 세례) 혹은 ‘죽을 위험 중의 세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적어도 공의회 이후에 이루어진 새로운 사고 체계에 따라 한국 교회도 많은 부분을 재편해야 한다는 점은 확실하다. 세례에 대한 부분들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의 신학적, 법적,

89) Rivella, M., «Battezzare i bambini in pericolo di morte anche contro la volontà dei genitori (can. 868 §2). Commento a un canone», Quaderni di Diritto Ecclesiale 9 (1996) 71~.

90) 남영도 체계적인 교육과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남영, 111~112쪽.

사목적 사고 체계가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며, 한국 교회만의 모습을 갖추어 가기를 희망한다.

## [참고 문헌]

- 1917년 『교회법전』(Codex Iuris Canonici), AAS 9, Pars II, 1917, 11~456.
- 1983년 『교회법전』(Codex Iuris Canonici), AAS 75, Pars II, 1983, 1~301;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9.
- 『동방교회법전』(Codex Canonum Ecclesiarum Orientalium), AAS 82(1990), 1061~1363.
-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79.
- 『가톨릭교회 교리서』(Catechismus Catholicae Ecclesiae), 한국천주교 중앙협의회, 2013.
- 경신성사성, 『로마 예식서』(Rituale Romanum), 『유아 세례 예식』(Ordo Baptismi Parvulorum), 1973(제2표준판),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0(제1판 1쇄).
- 경신성사성, 『로마 예식서』(Rituale Romanum), 『어른 입교 예식(시안)』(Ordo Initiationis Christianae Adultorum), 1974(표준판 수정),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1(제1판 1쇄).
- Notitiae 9, 1973, 274~278p. EV 4. 930p.
- Communicationes 1971년판, 1975년판, 1981년판.
- Bolognini, Franco, *Lineamenti di diritto canonico*, 245쪽.
- Carrara, Alberto, «Il rito del battesimo: struttura e teologia», La Rivista del Clero Italiano 82 (2001) 827~845.
- Celeghin, Adriano, «L'iniziazione cristiana nel CIC 1983», Periodica 84 (1995) 31~75; 267~314.
- Chiappetta, Luigi, *Il Codice di diritto canonico. Commento giuridico-pastorale*, vol.II, 3° edizione 2011.
- Frank, Elias, *I sacramenti dell'Iniziazione, della Penitenza e dell'Unzione degli infermi: Commento ai Canon 834~1007 del Codice di Diritto Canonico*, Città del Vaticano 2012.
- Lombardia, Pedro, e Arrieta, Juan Ignacio (cura), *Codice di diritto canonico*, vol II, Edizioni Logos. 632~633.
- Mostanza Rodriguez, Antonio, *Battesimo*, in Nuovo dizionario di diritto canonico, 1993, Milano 80~91.
- Pinto, Pio Vito(cura), *Commento al Codice di diritto canonico*, 2° edizione 534쪽.
- Renken, John. A., «Periculum Mortis: Danger of Death in Church Law», Philippine Canonical Forum 12 (2010) 69~99.

Rivella, Mauro, «*Amministrazione e ricezione dei sacramenti in pericolo di morte. Il viatico*», Quaderni di Diritto Ecclesiale 9 (1996) 314~320.

Rivella, Mauro, «*Battezzare i bambini in pericolo di morte anche contro la volontà dei genitori (can. 868 §2). Commento a un canone*», Quaderni di Diritto Ecclesiale 9 (1996) 66~75.

남영, 「죽을 위험 중에 있는 이들의 세례에 관한 교회법적 고찰」, 『가톨릭 사상』 60(2020), 105~130쪽.

레지오 마리아 활동수첩, 2015년.

박일영, 「대세」, 『한국가톨릭 대사전』 3권.

안세환, 「세례와 다른 성사들과의 관계 — 죽을 위험 중에 있을 때 세례받은 사람을 중심으로」, 『사목연구』 42(2019/여름), 47~92쪽.

## 국문초록

현행 법전 이전에 사용되던 약식세례 혹은 사적 세례를 의미하는 ‘대세’(代洗)가 지금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 이 대세 혹은 임종 세례 더 나아가서는 세례성사에 대한 가톨릭교회의 기본적인 개념이 변화되면서, 한국 교회에는 혼란이 있다. 1995년에 공포된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에서 55조가 임종 세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지금도 유효한 규정이다. 이 규정이 지금도 타당한가를 본 논고를 통해 밝히고자 한다.

먼저, 현재 한국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대세에 대한 개념들을 분석하니 세례받을 사람의 건강 상태, 그가 처한 상황, 예식, 집전자, 세례 여부, 조건대세, 대세 후의 보충 예식 등 여러 조건에 따라 다양한 의견이 나타난다. 그 가운데는 맞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도 발견되어 혼란스러움이 확인된다.

세례성사에 대해 1917년 법전과 공의회를 시작으로 새 예식서와 1983년 법전의 두 기조를 비교한다. 구 법전에서는 예식에 집중하면서 세례의 완전성에 중심을 두었고, 그에 따라 약식세례의 경우 나중에 세례의 다른 예식을 보충해서 받아야 하였다. 바티칸 공의회에서는 예전의 이 구분을 성인의 단계적 입교 기간이라는 관점에서 개정하도록 요구하였고, 1972년에 반포된 새로운 예식서는 기존의 방법을 개정하여, 상황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예식을 준비하고, 적용하도록 하며, 그리스도교 입문이라는 커다란 개념 아래 입문 성사의 연결성을 강조한다. 뒤를 이은 현행법전은 이 개념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여, 그리스도교 입문의 개념이 강조되고, 기존 성식세례와 약식세례의 구별과 보충 예식이 삭제되며, 조건부 세례가 단순하게 정리된다.

이어서 대세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몇 항목을 기본적으로 구 법전, 공의회, 새예식서 그리고 현행법전의 순서대로 비교한다. 1. 그리스도교 입문 개념과 입문 성사의 연결성: 사목지침서에서 ‘제2장

성사'에서 총론을 다루면서 '그리스도교 입문 과정에 따라 신앙을 가르치고 입문 성사를 거행한다'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2. 세례 예식의 구분: 구 법전의 성식세례와 약식세례의 구분이 폐지되었다는 점이 명확해져야 한다. 3. 대세 혹은 죽을 위험 중의 세례: 기존에 사용하던 '대세'는 모호함을 갖고 있고 혼란을 주며, 새로운 정신을 담기에는 부족하므로, 폐기해야 한다. 새 예식서 3장은 죽음의 위험이 가까운 때와 임종의 순간에 하는 성인의 더 짧은 입문 성사 예식이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이를 '임종 세례'로 단순화하였다. 하지만, 임종은 죽을 위험이 있는 상태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개념이기에 '임종 세례'란 용어는 모든 상황을 포함하기는 부족한 단어이다. 임종 세례라는 항목을 비상세례로 바꾸어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4. 보충 예식: 사목 지침서는 55조 3항에서 세례 보충 예식을 하라고 규정한다. 그러나 이 조항의 근거인 예식서 282항은 이 의미가 아니라, 아직 받지 못하여 완성하지 못한 입문 성사인 견진성사와 성체성사를 받도록 배려하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은 "임종(혹은 비상) 세례자가 건강을 회복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교리교육을 실시하여 적당한 시기에 다른 성사도 받게 한다(어른 입교 예식서, 282항 참조)"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조건 대세 또는 조건부 세례: 세례성사를 주기에는 어떤 부분이 확실하지 않을 때 조건부로 세례를 주는데, 시대에 따라 그 조건이 다르다. 한국교회에서는 사목지침서에서 비가톨릭 교회 공동체에서 세례받은 이들의 세례에 대해 달라진 개념을 적용해야 한다.

이 이외에 기타 관련된 집전자, 세례받을 자, 대부모, 세례 수여의 장소 및 기록과 증명 책임, 거행 장소 중 병원, 비신자 부모의 아이 세례, 관계된 성사 대장 정리, 비상세례에 대한 관계자 교육 등의 부분에서 공의회 이후에 이루어진 새로운 사고 체계에 따라 새롭게 정리해야 한다.

▶ 주제어: 대세, 임종세례, 비상세례, 보충예식, 그리스도교 입문성사, 세례성사, 죽을 위험, 사목지침서